

2013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기획·정책연구과제 안내**

2013. 11.

보 건 복 지 부  
국 립 암 센 터  
암정복추진기획단



## 5. 신청요건

### 1)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 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과제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

### 2)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선임급 이상의 정규 연구인력 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 연구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기간별 책임급, 선임급의 기준은 [별첨2]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참조

### 3) 참여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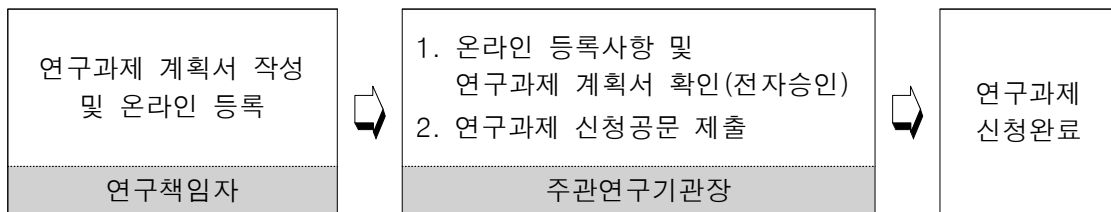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 예정일(2013.12.)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 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또는 타 부처 지원으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 모든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연구개발계획서는 접수 후 연구책임자의 신청 및 참여제한 여부에 대해 신청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신청 연구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는 탈락됨

## 6. 신청방법

### 1)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별첨1]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연구과제 계획서 서식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md.ncc.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함
- 작성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접수 일정에 맞추어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함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는 연구자가 전산 입력한 연구과제 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제출을 완료함



- ➔ 과제평가 및 관리는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

## 2) 속지사항

- 참여연구원 기재
  -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 시 [별첨2]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를 참고하여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연구비 산정
  - 연구비 지원규모와 [별첨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연구비를 산정함.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비용은 불인정함
- 위탁정산실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집행증빙서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3)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공문(일괄 제출)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계획서 전산파일
  - ※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nd.ncc.re.kr>)에 전산등록하여 제출

## 4) 제출기한

구 분		제출기한
과제접수	연구책임자	12. 2(월)~12. 5(목), 17:00
	기관담당자	12. 2(월)~12. 6(금), 17:00

-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 되므로,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접수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본 안내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은 『2013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계획』,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함

## 문의처

-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 : TEL) 031-920-1081~3, FAX) 031-920-1089
- 홈페이지 : <http://rnd.ncc.re.kr>, <http://ncc.ncc.re.kr>, <http://www.ncc.re.kr>
- 제출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내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 (대외연구기획지원팀)  
(우편번호 : 410-769)

**별첨1** 기획·정책연구 제안요청서

프로그램	기획·정책연구(정책연구과제)
대과제명	처방 가능한 표적항암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규모 및 기간	각 과제별 30백만원 이내, 6개월 이내
기획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의 표적 항암치료제 사용이 암환자 임상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이에 따른 표적 항암치료제의 효능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 분석의 수와 검사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li> <li>○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은 국가적인 임상암유전체검사 체계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고가 표적항암제 치료 대상을 선별하여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있음</li> <li>○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적인 임상암유전체 분석시스템을 통해 국가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 및 복지 증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li> <li>○ 체계적인 연구개발·산업화 지원 전략 및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대응과 보건의료산업분야의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li> </ul>
목표, 목적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의 표적항암제에 대한 국민들의 균등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안</li> <li>○ 필요한 환자에게만 투여하여 치료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li> <li>○ 국가적 임상암유전체시스템 구축을 통해 확보된 유전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항암신약 임상연구의 가속화,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활용이 가능함</li> </ul>
주요 기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과제를 제외한 3개 분야에 한 함</li> <li><b>제1과제: 표적항암제 약효예측 표적유전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표적항암제의 약효를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 (putative predictive genetic alteration)를 선정하고, 단일유전자변이, 배수체 이상, fusion gene 등 다양한 종류의 이들 유전자 변이를 현재 기술 수준에서 최소 비용 최대 효율로 동시에 포괄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유전체 분석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표적유전자 서열정보 포함) 도출</li> <li>※ 제1과제는 국립암센터 내부공모</li> </ul> </li> <li><b>제2과제: 진단방법에 대한 기술 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적항암제의 약효를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는 유전체 기반 통합 분석법을 조사하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 국내 임상 시료에 적용 시 최대의 효율과 최소의 비용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 플랫폼 및 프로토콜을 도출</li> </ul> </li> </ul>

	<p><b>제3과제: 진단검사법의 정도 관리 및 운영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암유전체진단 검사법의 국가적인 임상적용을 위한 정도 관리 가이드라인, 관리 주체 등 방안 도출</li> <li>- 유전체 정보, 샘플 관리 등에 대한 방안 도출</li> </ul> <p><b>제4과제: 표적항암제 사용의 경제성 및 제도적 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 항암제 투여확대에 따른 국가적 의료비용 등 경제성 분석, 항암제 효능 예측 유전체 기반 분석법의 임상적용의 경제성 분석</li> <li>- 법적 및 제도적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li> </ul>
<p><b>추진방법 및 추진체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수행된 연구 현황 및 수요예측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방안 또는 분석결과 제시</li> <li>○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필수적으로 구성하고 공청회, 자문회의 실시</li> </ul>
<p><b>특기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각 과제 간 연구진행에 대한 협의 필수</li> <li>○ 전체적인 연구진행 방향 조율, 중간 점검 등을 위해 과제 선정 후 참여 연구진에 국립암센터 암유전체 관련 연구자들이 포함될 수 있음</li> </ul>

프로그램	기획·정책연구(사전기획과제)
과제명	-
지원규모 및 기간	20백만원 이내, 4개월 이내
기획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진입과 질병구조 변화로 인하여 암 사망과 발생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li> <li>○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재정 수지 악화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효과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함</li> </ul>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 연구과제 도출</li> <li>○ 향후 Top-down 기획 본과제 제안요청서(RFP)의 기초자료로 활용</li> </ul>
주요 기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암 연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요 연구분야 도출</li> <li>○ 다분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형 암 중개연구</li> </ul>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수행된 암 연구 현황 및 수요예측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분야별, 기술 수준별 지원 방향 제시</li> <li>○ 산·학·연 전문가 인터뷰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아이টে을 바탕으로 구체적 수행과제 제안</li> </ul>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기획과제의 경우,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 본과제로 추진 가능</li> <li>○ 최종결과물은 해당 분야 동향보고서의 성격을 지녀야 하며, 기획 본과제 제안 요청서 초안을 포함하여야 함</li> </ul>

## 별첨2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연구기관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연구원보급
대 학	-부교수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부설 연구기관 6년 이상 근무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이하
국/공립 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소유 민간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로서 면허취득 후 12년 이상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로서 면허취득 후 7년 이상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로서 면허취득 후 2년 이상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및 비의료인 연구 자
국/공립 연구소	-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5년 이상 -기술직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	-연구관 -기술직 5급 -정부출연연구소의 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사	-연구사 -기술직 6급 이하 -정부출연연구소의 석사급 연구원	-정부출연연구소의 학사급 연구원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체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2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6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1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	-학사학위 이하 소지자

**별첨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세 목	내 용				
직접비	인건비	<b>① 사용용도</b>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b>② 계상기준</b>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sup>1)</sup> 을 해당과제 참여율 <sup>2)</sup> 에 따라 계상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1) 급여총액 : 4대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2) 해당과제 참여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td> <td>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 비율</td> </tr> <tr> <td>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td> <td>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td> </tr> </tbody> </table> </div>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없음</li> <li>※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함. 단, 해당 미지급 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시 제외하여야 함</li> </ul>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함(미지급 인건비 계상)</li> </ul>	구 분	내 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 비율
구 분	내 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 비율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비 목	세 목	내 용								
직접비	인건비	<p>&lt;내부인건비 지급 가능 대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li> <li>·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li> <li>·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li> <li>·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li> <li>·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li> </ul> <p><b>③ 계상방법</b>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액(월평균액)×참여율×실제 참여기간(월)</p>								
직접비	학생인건비	<p><b>① 사용용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li> </ul> <p><b>② 계상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함</li> </ul> <p><b>③ 계상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data-bbox="507 1771 1473 1899"> <thead> <tr> <th>학사과정</th> <th>석사과정</th> <th>박사과정</th> <th>박사후연구원</th> </tr> </thead> <tbody> <tr> <td>1,000,000원/월</td> <td>1,800,000원/월</td> <td>2,500,000원/월</td> <td>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td> </tr> </tbody> </table>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1,000,000원/월	1,800,000원/월	2,500,000원/월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1,000,000원/월	1,800,000원/월	2,500,000원/월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비 목	세 목	내 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b>참고</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율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함</li> <li>·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li> </ul> </li> <li>○ 참여연구원 변경 :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 위탁정산기관에 제출</li> <li>○ 사전승인사항 :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서 대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li> </ul> <p>➔ <b>불인정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li> <li>·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li> <li>· 연구개발계획서에 총원으로 명시된 인원내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총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비 시</li> <li>· 인건비 지급 시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li> <li>· 학생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승인 없이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li> </ul>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p>① <b>사용용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li> <li>○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li> <li>○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li> </ul> <p>② <b>계상기준</b></p> <p style="padding-left: 20px;">실소요 경비를 계상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b>참고</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과제종료 2개월 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함</li> </ul>

비 목	세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인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차 실적·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li> <li>·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li> <li>·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 컴퓨터 등 OA 기기)</li> <li>·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li> </ul> </li> </ul>
직접비	연구활동비	<p><b>① 사용용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li> <li>○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li> <li>○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li> <li>○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li> <li>○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 과제가 있는 주관과제에만 계상)</li> </ul> <p><b>② 계상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함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단,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없음</li> <li>○ 비임상·임상시험비는 시험 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 문의하여야 함</li> </ul> <p>➔ 불인정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참여인력의 여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li> <li>· 해당과제와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의 경비</li> <li>· 종신헌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li> <li>·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li> </ul>

비 목	세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li> <li>· 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학비 등</li> <li>·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계좌이체 등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li> </ul>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p><b>① 사용용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li> <li>○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li> <li>○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li> <li>○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식대)</li> </ul> <p><b>② 계상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li> <li>○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함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단,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없음</li> <li>○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부품의 구입·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임</li> </ul> <p><b>➔ 불인정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li> </ul>
직접비	연구수당	<p><b>① 사용용도</b></p> <p>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li> </ul> <p><b>② 계상기준</b></p> <p>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 범위에서 계상함</p>

비 목	세 목	내 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b>참고</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하며, 인건비를 감액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도 감액하여야 함</li> <li>○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li> </ul> <p><b>➔ 불인정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서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집행분</li> <li>·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li> <li>·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li> </ul>
직접비	위탁연구 개발비	<p><b>① 사용용도</b>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p> <p><b>② 계상기준</b>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10px;"><b>참고</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승인사항 :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li> </ul>
간접비	간접비	<p><b>① 사용용도</b></p> <p>① 인력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li> <li>○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li> </ul> <p>② 연구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li> <li>○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li> </ul>

비 목	세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li> <li>○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li> <li>○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li> <li>○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li> <li>○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li> <li>○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li> </ul> <p>③ 성과활용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li> <li>○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li> <li>○ 기술창업 출원·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li> </ul>

비 목	세 목	내 용
		<p><b>㉒ 계상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li> <li>○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17% 범위에서 계상함</li> <li>○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함. 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경우 10%까지 계상할 수 있음</li> <li>○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함</li> <li>○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하고, 설립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li> </ul> <p><b>➔ 불인정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li> </ul>

**비고**

1.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함)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됨
2.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